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경유사용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부하검사 방법 중 기존 Lug down 3모드 엔진회전수 제어방식을 속도제어 방식으로 변경하고, Lug down 3모드 방식과 한국형 경유147(KD147모드) 방식의 예열조건을 기존 정격출력의 40%에서 40초간에서 정격출력의 10%에서 30초간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예정
- 라. 기 타 :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6 제3호가목 부하검사방법란의 “엔진회전수”와 가목 비고 제2호 중 “엔진회전수”를 각각 “속도”로 한다.

별표 26 제3호나목의 부하검사방법 중 검사항목란 2) 중 “엔진정격회전수”를 삭제하고 검사방법란 (1) 한국형경유147(KD147모드) 검사방법의 (가) “40% 부하에서 50±6.2km/h의 차량속도로 40초간”을 “10% 부하에서 50±6.2km/h의 차량속도로 30초간”으로 한다.

같은 표 검사기준란 나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) 속도 제어방식(Lug-Down 3모드)은 부하검사방법 1모드에서 측정 한 엔진최대출력이 엔진정격출력의 50% 이상, 2모드에서 45% 이상, 3모드에서 40% 이상이어야 한다. 이 경우 엔진최대출력의 검사기준 값은 산출한 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, 1ps 단위로 산출한 값으로 한다.

같은 표 검사기준란 나)의 검사방법란의 (1) 중 “엔진회전수”를 “속도”로 한다. 같은표 검사기준란 나)의 검사방법란 (1)의 (가) 중 “40% 부하에서 50±6.2km/h의 차량속도로 40초간”을 “10% 부하에서 50±6.2km/h의 차량속도로 30초간”으로 하고, (나) 중 “엔진정격회전수에서”를 삭제하며 (다) 중 “최대출력의 엔진정격회전수”를 “차량속도 80±3.2km/h”로, “엔진정격회전수의 90%”를 “차량속도 70±3.2km/h”로, “엔진정격회전수의 80%”를 “차량속도 60±3.2km/h”로 한다.

같은표 검사기준란 나)의 검사방법 (1) (다) 중 “엔진회전수”를 삭제하고, (라) 중 “엔진회전수 및”과 “각각 10rpm,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공포 후 1년까지는 엔진회전수 제어방식과 속도 제어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26]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·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(제97조 관련) 1. ~ 2. (생략) 3. 배출가스검사 가. 부하검사방법의 적용		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가. 부하검사방법의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용연료</th><th>부하검사방법</th><th>적용차종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휘발유·알코올·가스</td><td>(생략)</td><td></td></tr> <tr> <td>경유</td><td>한국형 경유147(KD147모드) 검사방법</td><td>1) 승용자동차 2) 중형 이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</td></tr> <tr> <td></td><td><u>엔진회전수</u> 제어방식(Lug-Down3모드)</td><td>1)~2) (생략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사용연료	부하검사방법	적용차종	휘발유·알코올·가스	(생략)		경유	한국형 경유147(KD147모드) 검사방법	1) 승용자동차 2) 중형 이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		<u>엔진회전수</u> 제어방식(Lug-Down3모드)	1)~2) (생략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용연료</th><th>부하검사방법</th><th>적용차종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휘발유·알코올·가스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/tr> <tr> <td>경유</td><td>한국형 경유147(KD147모드) 검사방법</td><td>1) 승용자동차 2) 중형 이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</td></tr> <tr> <td></td><td><u>속도</u> 제어방식(Lug-Dow n3모드)</td><td>1)~2)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사용연료	부하검사방법	적용차종	휘발유·알코올·가스	(현행과 같음)		경유	한국형 경유147(KD147모드) 검사방법	1) 승용자동차 2) 중형 이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		<u>속도</u> 제어방식(Lug-Dow n3모드)	1)~2) (현행과 같음)	
사용연료	부하검사방법	적용차종																								
휘발유·알코올·가스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
경유	한국형 경유147(KD147모드) 검사방법	1) 승용자동차 2) 중형 이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																								
	<u>엔진회전수</u> 제어방식(Lug-Down3모드)	1)~2)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연료	부하검사방법	적용차종																								
휘발유·알코올·가스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경유	한국형 경유147(KD147모드) 검사방법	1) 승용자동차 2) 중형 이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																								
	<u>속도</u> 제어방식(Lug-Dow n3모드)	1)~2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
비고. 1. (생략) 2. 경유사용 자동차 중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(KD147모드)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<u>엔진회전수</u> 제어방식(Lug-Dow n3모드)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. 3. (생략) 나. 부하검사방법		비고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속도</u> 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검사항목</th><th>검사기준</th><th>검사방법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)</td><td>(생략)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검사항목	검사기준	검사방법	1)	(생략)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검사항목</th><th>검사기준</th><th>검사방법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)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검사항목	검사기준	검사방법	1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
검사항목	검사기준	검사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
1)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
검사항목	검사기준	검사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
1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
[illegible]

(Lug-Down 3모드)는 부하검사방법 1모드에서 엔진정격회전수, 엔진정격최대출력의 측정결과가 엔진정격회전수의 ±5% 이내이고, 이 때 측정한 엔진최대출력이 엔진정격출력의 50% 이상이어야 한다. 이 경우 엔진최대출력의 검사기준 값은 엔진정격출력의 50%로 산출한 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, 1ps 단위로 산출한 값으로 한다.

(Lug-Down 3모드)
(가)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차대동력계에서 엔진정격출력의 40% 부하에서 50±6.2 km/h의 차량속도로 40초간 주행하면서 예열한다.
(나) 자동차의 예열이 끝나면 즉시 차대동력계에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상태에서 자동차속도가 가능한 70km/h에 근접하도록 하되 100km/h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속기어를 선정(자동변속기는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온

측정한

50% 이상, 2모드에서 45% 이상, 3모드에서 40% 이상

산출한

(가) -----

10%

30초

(나) -----

자동차

다)하여 부하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모드를 시작한다. 다만,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정격회전수에서 차속이 85 km/h를 초과하지 않는 변속기어를 선정하여 검사모드를 시작한다.

(다) 검사모드는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상태에서 최대출력의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, 엔진정격회전수의 90%에서 2모드, 엔진정격회전수의 80%에서 3모드로 형성하여 각 검사모드에서 모드시

차속이

(다) -----

차량속도 80 ±3.2km/h

차량속도 70 ±3.2km/h

차량속도 60 ±3.2km/h

